

/ 資料 /

다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난 9월19일에 개정공포된 도시재개발법시행령과 25일에 공포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중 개정된 부분을 각각 옮긴것이다. / 편집자 /

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개정령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를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가”로 하고, “당해 시의”를 “당해 시 또는 군의”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소토지의 규모 및 건축물의 노후불량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
- 토지의 형상이 건축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의 토지
- 건축구조상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건축물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경미한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 ①법 제5조제5항 단서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부장관의 결정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공공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및 구역안의 세부도로의 변경
 - 건축시설의 규모의 변경이 없는 위치 또는 형태의 변경
 - 건축물의 전폐율·용적율 및 높이의 각 20분의 1 미만의 변경
 - 용도의 변경 다만, 주된 용도(당해 건축시설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 ②법 제5조제5항단서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한 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에의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건축물 층수의 변경이 없는 높이의 변경으로 한다.

⑥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건축물의 전폐율·용적율·높이·배열 및 주된용도

제7조 제1항 본문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재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결정권한.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입안하는 재개발사업계획중 공원(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의 면적의 축소 또는 폐지에 관한 결정권한.

제20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2.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법 제23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제2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합의 합병·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제47조 제1항중 “대출이자에 의한다”를 “대출이자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都市再開発法施行令中改正令 主要骨子

가. 再開発区域의 指定要件중 建築密度로서의 効果을 다할 수 없는 정도의 過小地土 등의 基準과 老朽·不良建築物 등의 基準을 정하였음. (令 第3條의 2)

나. 再開發事業計劃의 變更事項中 中央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建設部長官이 決定할 수 있는 輕微한 事項과 당해 再開發事業計劃을 立案한 市長 또는 郡守가 建設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 決定되는 變更事項을 정하였음. (令 第5條)

다. 再開發事業의 원활하고 신속한 施行을 위하여 市長·郡守가 立案하는 再開發事業計劃에 대한 建設部長官의 決定權限을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였음. (令 第7條第1項第3號)

도시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연구시설
- 문화시설
- 종합의료시설
- 통신시설
- 자동차검사시설
- 유수지시설

제3조 제1항제1호 라목 내지 바목을 마목 내지 사목으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전거전용도로

제3조 제1항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자연공원

제3조 제3항중 “화물사동차정류장”을 “도매시장과 화물차 동차정류장”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5조 제1항제3호중 “퇴적”을 “적취”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1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도시계획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포함한다)의 도시계획구역
- 제1호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구역과 관계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도시계획구역.

② 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성격
2. 도시지표
3. 인구계획
4. 토지이용계획
5. 교통계획
6. 공공시설계획
7. 산업개발계획
8. 생활환경계획
9. 공원녹지계획
10. 사회개발계획
11. 재정계획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도시기본계획에는 개괄적인 기본구상도(축척 2만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제 1호 및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 4호를 삭제하고 제 5호를 제 4호로 한다.

1. 단위도시계획시설 구역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구역의 변경(공원 및 녹지를 제외한다)과 법 제 2조 제 1항제 1호 다목의 사업계획구역 면적의 25분의 1 미만인 사업계획구역의 변경(변경면적이 3만 3천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3. 이미 결정된 법 제 2조제 1항제 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계획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 및 시설내용의 결정 및 변경.

제9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 1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의 승인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 500분의 1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도면(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관하여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할 지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때에는 지적도록 써 당해 신청도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 2 및 제10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 14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할 도시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광장·주차장(노외주차장에 한한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정류장중 시내버스 자동차용 정류장을 제외한다)·철도·고속철도·항만·공항·운동장·유원지·공용의 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취수시설·저수시설·정수시설 및 배수시설에 한한다)·하수도(종말처리장에 한한다)·공동구·유통업무설비 및 문화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2.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② 제 1항에 의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도시계획의 규모는 도로 및 광장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접

정하는 규모로 하고, 기타의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는 이 규모에 관계없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폭 12미터 이상

2. 광장(교통광장에 한한다): 폭 12미터 이상 도로와 연

결되는 광장

③ 집행계획은 매년 1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계획의 수립시점을 기준으로하여 당해 도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이 4년이후에 착수될 것으로 예정되는 경우와 사업시행기간이 5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 단위로 이를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계획이 국가계획 또는 도계획과 관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부장관이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⑤ 건설부장관·시장 또는 군수는 집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기간
4. 사업시행계획 도서

제10조의 3 (집행계획의 공고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 4조의 2 제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계획의 공고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 7조의 2 각호의 1에 규정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 14조의 2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제 1항제 5호를 제 6호로 하고, 동항에 제 4호 및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매시장(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3백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운동장(정구장 및 수영장에 한한다) 및 지하도로

5.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접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도시계획시설

제 2장에 제 14조의 2 및 제 1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2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 ① 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 16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청회는 도시계획구역 단위로 개최하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요지중 유사한 내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⑤ 공청회는 시장 또는 군수나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⑥ 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 16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14일간 일반

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⑦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 6 항의 공람기일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또는 법 제1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전술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요지와 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의 의견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3 (주민의 의견청취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 법 제 16조의 2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청취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이란 경우”라 함은 제 7 조의 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의 경우를 말한다.

제16조 제 3 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 2 내지 제19조의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 법 제20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시가화 유보기간은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및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이상20년 이내 범위 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 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 법 제20조의 2 제 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시가화조정 구역 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지정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제19조의 4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허가대상행위) ① 법 제 20조의 2 제 4 항제 1 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축사·퇴비사·잠실·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관리용 건축물(기존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양어장 기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 2제 4 항제 1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평방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나.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평방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2. 부락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나. 새마을회관의 설치

다. 기존정미소(개인소유를 포함한다)의 증축

라. 정자동 간이휴게소의 설치

마.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바. 선착장 및 물양장의 설치

3.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가. 토지수용법 제 3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나.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다. 보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읍·면·동사무소의 설치

라.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공중변소 및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농업협동조합·축산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아. 교정시설의 설치

자.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4. 광공업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공장·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중소기업 진흥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협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이 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 배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라.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5. 기존 건축물의 동일 용도 및 동일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6.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부력·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7.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신축이 허용되는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 행위, 공장상호간의 업종변경 행위(오염물질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업종에서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공장 또는 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취사용가스판매점·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복공소·의원·약국·접골시술소·안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당구장·장의사·탁구장등 간이 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서 용도변경 행위

8.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20조의 2 제 4 항제 2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위
 - 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
 - 나. 토지수용법 제 3 조 제 1 호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 다. 농림·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 을 위한 경우
 - 라. 시가화조성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 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경우
2.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다만, 분할의 경우에 허가받아야 할 면적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 5 조제 3 항의 규정에 준용 한다.

제19조의 5 (시가화조성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20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성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주변토지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아니되며, 허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기준으로서는 제 5 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가화조성구역 안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축목의 재식과 조림을 위한 축목의 벌채에 대한 허가기준에 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1. 법 제 4 조제 1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2. 건축법 제 5 조제 1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3. 제 19조의 4 제 1 항에 규정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농업 또는 어업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성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조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신청의 내용이 시가화조성 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의 6 (허가신청서 등) ① 시가화조성구역 안에서 법 제20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행위허가 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행위의 종류 및 내용

4. 행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② 제 1 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제 19조의 5 제 3 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의 허가신청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9조의 7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0조의 2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성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

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이미 준공된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로서 이를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가화조성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내용을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사의 완료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제 1 항 본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0조 제 1 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토지의 분할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등의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제20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 1 항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 규모와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면적의 토지형질변경면적에 대한 비율 및 토지분할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제 1 항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신청서에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신청서”로 하고 동항 제 4 호 및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의 성명, 주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제25조 제 2 항을 제 3 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 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재원조서

3. 공사설계도서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제26조 제 1 항 중 “그 신청서를”을 “제25조제 2 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 3 항을 삭제한다.

② 제 1 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재원조서

3. 개략설계도서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제2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 2 (서류의 공람 등) ① 법 제25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신청의 요지

2. 공람의 일시 및 장소

② 법 제25조의 2 제 1 항의 공고는 공보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8조의 2 제 2 항 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하고, 동조제 3 항 중 “도시계획시설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동조 제 5 항 중 “관계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60조 제 1 호 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61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 시의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시의 부시장이 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의 규모) 법 제86조제 1항에 의하여 환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사업의 규모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당해 사업에 공할 토지의 면적 규모가 5만평방미터 이하인 사업
2.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 당해 사업에 공할 토지의 면적 규모가 15만평방미터 이하인 사업

[별표 5] 중 “인천시” 및 “대구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都市計画法施行令 改正理由

都市計画法의 改正(1981. 3. 31法律 第3,410號)에 따라 그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現行規定의 施行上의未備點을 補完·整備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가. 都市基本計画을 수립하여야 할 都市計画区域의 범위와 都市基本計画에서 정하여야 할 事項을 정함. (令 第7條第 1項 내지 第 3項)
- 나. 市長·郡守가 建設部長官에게 都市計画 地籍告示를 신청함에 있어 告示할 地籍의 境界가 行政区域의 境界와 일치되는 때에는 地籍図로써 申請図面에 갈음하도록 함. (令 第9條第 1項)
- 다. 每年 年次別 執行計画을 수립하여야 할 都市計画의 범위와 樹立方法 및 節次를 정함. (令 第10條의 2 第 1項 내지 第 5項)
- 라. 都市基本計画의 수립에 있어 住民 및 관계専門가들이 意見을 發表할 수 있도록 개최하는 公聽會에 대한 事項을 정함(令 第14條第 1項 내지 第 8項)
- 마. 市街化調整区域에서의 市街化 留保期間은 당해 都市計画区域안의 人口·土地·産業發展狀況등을 고려하여 5年以上 20年이내의 범위에서決定하도록 함. (令 第19條의 2)
- 바. 市街化調整区域안에서 施行可能한 都市計画事業의 内容, 許可對象行為의 種類 및 基準을 정함(令 第19條의 3 내지 사). 換地에 관하여 土地区劃整理事業法을 準用할 수 있는 一團의 住宅地 造成事業 또는 一團의 工業用地 造成事業의 規模를 정함. (令 第67條)

◎대통령령제10, 480호 (1981. 10. 8 공포)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1 항 제 4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 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지하층의 설치) ①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20만이상의 시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지상층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진애 및 오물처리장·묘지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층의 평균 바닥면적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이 영 또는 조례에 규정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하층중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전용되는 부분과 창고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평방미터마다 1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 (도로의 설치·폐지 또는 변경) ① 법 제 2 조 제 15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연장·폭 및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간·연장·폭 및 위치와 폐지 또는 변경 전후의 도로의 상태.
2. 당해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의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

제145조 제 3 항 중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 다음에 “(단독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제146조 제 3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9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항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 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3. 해사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수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해사업무관계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
11. 수산물·선구 및 어구의 점포

제155조의 3 을 삭제한다.

제157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시계획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여하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8조의 제 2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9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시의 패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정하고 10분의 4(주거 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이상의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전폐율의 최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8조의 3을 삭제한다.

제159조에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 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대지면적은당해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적용하는 기준면적에 그 대지안의 단독주택의 동수를 곱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제168조의 2 제 2 항의 표중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란의 다음에 “공동주택”란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 미터)

구분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까지의 정북 방향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각방향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공동주택	—	3.0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2.0 이상)	2.0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1.5이상)

제168조의3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 2 항을 제 3 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 9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165평방미터 이상 인 대지에 건축물(시장 및 석유화학공업단지안의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대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당해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1.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 2천평방미터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4.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 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② 제 1 항의 경우에 조경을 하는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 미터 미만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 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

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하는 지붕의 수평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대지중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상업지역안의 건축물은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범위까지만 이를 산입한다.

제174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것으로서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2. 3층 이하이고, 지하층이 없는 것으로서 전기·가스 및 수도의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3. 법·이 영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 다만, 시장경역안에서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3·법 제30조·법 제39조 또는 법 제3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0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군수는 법 제53조의 7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

1.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내력을 갖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굽착할 때 인접대지(건축하는 당해대지를 포함한다)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기존 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로서

제180조제 3 항중 “10년간에 한하여” 다음에 “(제 2 호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동항 제 2 호중 “및 공해방지시설”을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로 한다.

[별표 2]중 ⑦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관람집회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탕면적의 합계가 1천50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 및 집회장을 제외한다)

[별표 6]중 ④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교육 및 연구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 및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제외한다)

[별표10]의 표중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품 명
(1)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	1. 포트랜드시멘트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4. 나왕베니어코어합판 5. 수도용아연도강판 6. 인입용비닐절연전선 7. 옥내용소형스위치류 8. 콘센트 및 플러그

8. 도아크래우저
10. 도아록
11. 수도꼭지
12. 배관용밸브
13. 복층유리
14. 성첩

【부 표】의 ④근린생활시설의 1. 중 “동일건축물안” 다음에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동일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를 삽입하고, 7. 중 “200평방 미터 미만인 것”을 “200평방미터 미만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동표의 ⑬ 판매시설의 3. 중 “제 4 항 제 1호 내지 제 3호 및 제 9호에 게 기하는 용도 중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고,”를 “제 4 항 제 1호의 용도와 동항 제 2호 · 제 3호 또는 제 9호의 용도 중 1 이상의 용도가 복합되어”로 하고, 동표의 ⑭위락시설의 5. 중 “유기장(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유기장업에 의한 유기장 · 기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동표의 ⑯본문 중 “소방법” 다음에 “가스사업법 · 석유사업법 · ”을 삽입하고, 동표의 ⑰해운시설 6. 중 “해운시설”을 “해운시설 : 항만법 제 2 조제 2 항 제 1호 내지 제 7호 및 제 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主要骨子

- 가. 建築物의 容積率의 算定에 있어서 地下層部分의 面積을
제외하도록 하였음. (第3条第1項第4号但書)

나. 人口 20万이상의 市 또는 建設部長官이 指定·公告하는
行政区域안에서 地上層의 延面積이 200平方미터이상인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原則的으로 延面積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面積의 地下層을 設置하도록 하였음. (第
113条第1項本文)

다. 6層이상인 建築物에는 乗用昇降機를 義務的으로 設置하
도록 하였으나, 6層建物의 경우에 한하여 各層의 居室의 用途로 사용되는 바닥面積 300平方미터마다 1個이상의 直通階
다. 6層이상인 建築物에는 乗用昇降機를 義務的으로 設置하
도록 하였으나,

다. 6層이상인 建築物에는 乗用昇降機를 義務的으로 設置하
도록 하였으나, 6層建物의 경우에 한하여 各層의 居室의 用途로 사용되는 바닥面積 300平方미터마다 1個所 이상의 直通階段이 설치된 경우에는 昇降機의 設置義要를 지지 아
니하는 것으로 하였음. (第129条但書) 事務

라. 都市計劃施設予定地안에서 許可할 수 있는 假設建築物의
범위를 緩和하였음. (第174条第1項)

마. 工業標準施設予定地안에서 国工業規格表示品의 使用義務
對象인 建築材料의 品目에 6個品目을 追加하였음. (別表
10)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

◎대통령령제1,481호 (1981. 10. 8 공포)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하다

제 3 조 (학교환경위생점화구역) ① 법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강화 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가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 설정일자와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제3조의2 (정화관리의 구역)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학교간의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복 된 구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1. 상·하급 학교간의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학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2. 같은 급의 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교별로 적용. 단, 같은 학교 내부에서는 학급학교와 유치원은 상·하급 학교로 간주

③ 학교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 될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 6 조 제 1 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상태정화구역(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정화구역
안에서 법 제 6 조제 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
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제 4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조의 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환경위생 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부교육감이 없는 교육위원회는 학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소속직원 또는 관련 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치종 학식과 경험에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폐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하
⑤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⑥ 위원의 임기 및 기타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⑦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당해 시·군·구의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 소속하에 정화위원회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정한다. 으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정화의 요청)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에 한한다)·군수·구청장에게 법 제 6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조치 또는 철거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제 1 항제 3 호중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한다.

제 1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등교증지)① 학교의 장은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교증지를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예방법 제 2 조의 규정된 전염병환자. 다만, 제3 종 전염병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 1 호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 学校保健法施行令中改正令 主要骨子

가. 改正要旨

- (1) 学校環境衛生淨化区域을 設定할 때에는 絶對淨化区域(学校出入門으로부터 50미터까지의 地域)과 相對淨化区域(学校境界線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地域으로 区分하여 設定하도록 함. (令 第 3 条)
- (2) 学校環境衛生淨化義務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教育監 所屬下에 学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를 두도록 함. (令 第 4 条의 2)
- (3) 傳染病患者 및 傳染性이 강한 疾患에 感染된 者에 대하여는 学校의 長이 登校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令 第 13 条)
- (4) 学校環境衛生淨化区域 設定權을 教育委員會로부터 教育區廳長 또는 市·郡 教育長에게 委任함. (令 第 14 条第 1 項)

会員動靜

변경 □釜山支部 : △김택진 / 김택진건축설계원 / 단독 75 / △이진영, 배종원 / 견양 설계사무소 / 합동 68 / △이상철, 구준건 / 성도건축설계사무소 / 남구 남천동 8~8 /

□京畿支部 : △김영복 / 동구현대건축 / 합동 79 / △유재현 / (주) 삼우건축 / 합동 79 / △한부성 / 보림종합건축 / 합동 25 / △홍재혁 / 화성종합건축 / 단종 24 / △박태신 / 명성건축설계 / 단독 90

□慶北支部 : △김준필 / 청우건축설계사무소 / 동구 신암동 249~6 / 단독 15 / △전성필, 최병민 / 경산건축설계사무소 / 합동 5 / △김봉수 / 선산건축설계사무소 / 구미 시원평동 374~13 / 단독 5 / △엄주남 / 국일건축연구소 / 단독 6 / △손재수 / 권영구 / 경주제일건축사무소 / 합동 1 / △조성현, 이영희 / 동아건축연구소 / 합동 2 / △도정기, 송재성, 김영철 / 김천건축설계사무소 / 합동 3 / △권순호, 송길환 / 화신건축설계사무소 / 합동 4 / △김옥배 / 현대건축설계사무소 / 단독 1 / △조문환 / 합동건축설계사무소 / 단독 2 / △

정구운 / 합동건축설계사무소 / 단독 3 / △백운학 / 동양건축설계사무소 / 단독 4 / △이신환 / 중앙설계사무소 / 종합 1 / △김태웅 / 흥한건축설계감리공단 / 종합 2 / △양임수 / 세진건축설계감리공단 / 종합 3 / △김영길, 조문환, 조국환 / 포항종합건축설계사무소 / 합동 6 / △최종배 / 최준한 / 포항세진건축설계사무소 / 합동 7 / △이명환, 신명수 / 연합건축설계사무소 / 합동 8 / △현석홍, 김용관 / 한양건축설계사무소 / 합동 9 / △조정상, 김인곤 / (주) 스매크건축 / 합동 10 / △양병모, 김준식 / 동서건축연구소 / 합동 11 / △이상만, 임병우 / 건축사구미합동사무소 / 합동 12 / △김성종, 이우상 / 합동건축설계사무소 / 합동 13 / △김용성, 권영근 / 내외영풍건축설계사무소 / 합동 14 / △장상현, 이택종 / 영림건축합동설계사무소 / 합동 15 / △박재광 / 동신건축연구소 / 단독 7 / △권혁태 / 한일건축설계사무소 / 단독 8 / △김봉일 / 대홍건축설계사무소 / 단독 9 / △정원성 / 부림건축설계사무소 / 단독 10 / 안호일 / 협동건축연구소 / 단독 11 / △장학학선 / 대진건축설계사무소 / 단독 12 / △최병창 / 신도건축설계사무소 / 단독 13 / △전한권 / (주) 스매크 / 신고 3 / △김영태 / 태창건축설계사무소 / 단독 14 / △서상문 / 정건축설계사무소 / 단독 15 / △김두하 / 신진건축설계사무소 / 단독 16 /

전북 □서울支部 : △안일남 / 석립합동건축연구소 / 종로구 운니동 98-5 / 면허 1876 / 합동 293

□京畿支部 : △오재영 / (주) 삼우건축설계 / 남양주군 구리읍 교문리 200~2 / 면허 668 / 합동 79 / △강용원 / 삼호종합건축연구소 / 의정부시의정부 4동 223~54 / 면허 415 / 단독 21 / △김영길 / 동구현대건축 / 남양주군 구리읍 수백리 449~2 / 면허 2-954 / 합동 80

성남 □慶北支部 : 대구건축사 회원 일동은 수재의 연금 70만원을 대구 직할시장에게 전달했다. / 9. 26일 /

경북 “축하합니다” □서울支部 : 이백길회원 4남 9월 26일 / △장기인회원 4남 9월 29일 /

수원 “오래사세요” □서울支部 : 한광수회원 9. 10 / △유준규회원 9. 10 / △忠南支部 : △안중삼회원 부친 9. 14 /

별내 “삼가명복을 빕니다” □서울支部 : 신덕항회원 부친 별세 9. 30

□忠南支部 : △김길수회원 모친 별세 9. 7